



경비원 아저씨와 함께 맑고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어요!

이 홍보물은 경비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인권향상을 위하여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면 좋을 방안들을 제시한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SH공사, 희망제작소 제작, 2016.7 발행)의 내용을 바탕으로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희망** 제작소가 공동으로 제작 배포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어떤 일자리일까요?

아파트 경비원의 평균연령은 65.6세로 중고령층의 비중이 높습니다.
(아파트노동자 지원방안연구,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주당 근로시간이 69.4시간으로 평균 근로자들에 비해 44% 더 오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분	평균 연령	주당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일수	근속기간 (월)	경력기간 (월)
경비원	61.5	69.4	19.0	40	5.6
전체 근로자	40.7	48.4	22.4	6.1	8.1

※ 한국고용정보원, 2009년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OES)



입주민과 함께 만드는 아파트 경비원 상생고용을 위한 가이드

경비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적절한 경비원들의 업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경비용역계약 가이드

- 경비원의 근로계약기간을 용역회사의 용역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합니다.
- 용역회사 변경 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아래 예시처럼 계약기간과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경비원 대표와 공식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 용역회사 적격심사 및 재계약 심사 때 상생고용 노력을 반영합니다

계약서 예시

제00조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0년간)로 한다.
- “관리주체”(발주부서)가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상대자”(용역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경비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주민의 편의와 용역업무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관리주체”(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용역회사)는 기존 용역업체의 직원 고용이 새로운 용역업체에 승계되고, 직원의 기존 근로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경비원 근무환경 가이드

-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업무요청은 휴게시간 이후에 합니다.
- 아간 휴게시간은 연속적으로 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불가피하게 택배수령 등의 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휴게시설은 경비초소와 멀리 않은 장소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휴게공간에는 기본적인 냉난방 기구와 취침·취사 도구를 구비합니다. 휴게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경비원을 밖에서 볼 수 없도록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합니다.
- 휴게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지를 통해 알립니다.

경비원 업무 가이드

- 경비 업무 이외 전기시설 관리, 도로 보수, 조경, 건물 청소 등은 경비원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 이러한 업무는 담당자와 외부 전문업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 택배물건의 분실이나 내용물 손상에 대해 경비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합니다. 택배보관함을 설치하여 분실사고를 예방하고, 택배수령 당일에 찾아가도록 안내합니다.
- 신체적 부담이 크고, 시간적인 비중이 높습니다. 경비원에게 정기적인 분리수거를 지시하려면 경비원의 동의를 얻고, 별도의 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요?

1.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 실태

아파트 경비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됩니다. 하지만,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경비원의 고용계약 역시 해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 또는 6개월 안팎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계약기간 종료 때 경비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제가 일하는 아파트는 원래 자치관리(입주자대표회의의 직접관리)였다가 얼마 전 용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치관리 때는 고용계약을 1년 단위로 했는데, 지금은 3개월마다 합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일을 그만 뒤도 퇴직금도 못 받고, 또 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해요.”
(경비원 강OO 씨)

※ 여기에 실린 인터뷰는 2016년 5월 25~26일 희망제작소가 노원노동복지센터에서 실시한 아파트 경비원들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2.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무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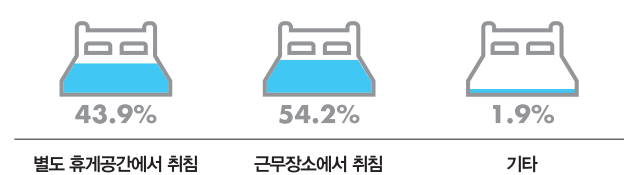
아파트 경비원들은 경비업무 이외에도 청소, 분리수거, 택배, 주차 등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어 업무 스트레스가 많고, 입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잘 보장되지 않거나, 휴게공간이나 취침장소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심 휴게시간(12시~13시)에 택배회사 트럭이 많이 들어오고, 저녁 휴게시간(19시~20시)에는 주민들이 경비실로 택배를 찾으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명목은 휴게시간이지만 택배 받아주고 또 찾아주고 하다보면 쉴 수가 없는 거죠.”
(경비원 김OO 씨)

근무 중 휴식



별도 취침장소 여부



휴게공간 구비 여부



경비원 아저씨도
우리 이웃이에요!



경비원 상생고용을 위한 입주민의 약속

- 하나** 우리는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무관!
- 둘** 택배는 가급적 직접 수령합니다
부득이하게 경비실에 맡긴 경우, 근무시간 중에 찾아갈게요!
- 셋** 휴게실은 휴게실답게!
경비원을 위해 제대로 된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 찬성합니다.
- 넷** 부당한 추가업무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비원의 주요 업무는 감시업무. 어쩔 수 없이 요구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합니다.

- 다섯** 경비원의 안정된 고용을 지지합니다
경비원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비용역업체를 지지합니다.
- 여섯** 경비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공동체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만나고 소통하겠습니다.
- 일곱**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여덟** 경비원이 아파트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잊지 않고 존중하겠습니다